의 안 번호 제2641호~제2656호 2025. 9. 16.(화) 11:00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16건 : 붙임 참조 (개정조례안 7, 제정안 2, 동의안 3, 의견청취안 2, 계획안 2)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Ⅰ 심사대상 안건

O 의안번호 제2641호 :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42호 :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O 의안번호 제2643호 :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O 의안번호 제2644호 :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의안번호 제2645호 :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의안번호 제2646호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의안번호 제2647호 :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48호 : 장성 군관리계획(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O 의안번호 제2649호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50호 : 장성군 추모공원(공설납골당) 민간위탁 동의안

O 의안번호 제2651호 :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제2652호 :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O 의안번호 제2653호 :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의안번호 제2654호 :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의안번호 제2655호 :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의안번호 제2656호 :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Ⅱ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2641호	2025. 8. 29.	장성군의회의장 (김연수 의원)	2025. 9. 2.	2025. 9. 9.
제2642호	2025. 8. 29.	장성군의회의장 (심민섭 의장)	2025. 9. 2.	2025. 9. 9.
제2643호	2025. 8. 29.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 의원)	2025. 9. 2.	2025. 9. 9.
제2644호	2025. 9. 1.	장성군수 (기획실)	2025. 9. 2.	2025. 9. 9.
제2645호	2025. 9. 1.	장성군수 (기획실)	2025. 9. 2.	2025. 9. 9.
제2646호	2025. 9. 1.	장성군수 (총무과)	2025. 9. 2.	2025. 9. 9.
제2647호	2025. 9. 1.	장성군수 (관광과)	2025. 9. 2.	2025. 9. 9.
제2648호	2025. 9. 1.	장성군수 (문화교육과)	2025. 9. 2.	2025. 9. 9.
제2649호	2025. 9. 1.	장성군수 (주민복지과)	2025. 9. 2.	2025. 9. 9.
제2650호	2025. 9. 1.	장성군수 (가족행복과)	2025. 9. 2.	2025. 9. 9.
제2651호	2025. 9. 1.	장성군수 (가족행복과)	2025. 9. 2.	2025. 9. 9.
제2652호	2025. 9. 1.	장성군수 (환경과)	2025. 9. 2.	2025. 9. 9.
제2653호	2025. 9. 1.	장성군수 (세무회계과)	2025. 9. 2.	2025. 9. 9.
제2654호	2025. 9. 1.	장성군수 (보건정책과)	2025. 9. 2.	2025. 9. 9.
제2655호	2025. 9. 1.	장성군수 (보건정책과)	2025. 9. 2.	2025. 9. 9.
제2656호	2025. 9. 1.	장성군수 (보건정책과)	2025. 9. 2.	2025. 9. 9.

Ⅲ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 군관리계획(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원안채택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추모공원(공설납골당)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철도,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원안채택

1 /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8. 29.

O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김연수 의원)

O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장성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관리 및 계승하고,
- 향토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향토문화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지정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1조)
- 보존관리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8조)

- 본 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와 향토유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보호・관리・계승하기 위한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8. 29.

O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심민섭 의장)

O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안 제4조)
- 안전시설 설치, 관계인에 대한 권고(안 제5조~안 제6조)
- 화재 대응매뉴얼 제작 · 배포,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8. 29.

O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차상현 의원)

○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O 제안이유

-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협의체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치매관리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 조례의 목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5조)
- 제2장 치매관리ㆍ지원
 - · 시행계획의 수립 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 제3장 치매안심센터
 -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5조)

- 본 제정안은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O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O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
 - 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5조)
 -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7조제2항)
 - 기금 심의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 심의대행 삭제(안 제7조제3항)
 →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10조)
 -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예치현황 신설(안 제7조제3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관리의무 신설(안 제7조제4항)
 - 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5 /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비후보자 5명을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장성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여 장성군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 역할 수행

- 위촉 대상자 : 5명

연번	성 명	자 격	주요경력
1	유용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1985~2018) 구례군청 서기관 퇴직
2	김형수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018~2019) 장성여중 교감 (2019~2021) 장성중 교감 (2022~2023) 진도석교중 교장
3	양월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2012~2015) 경성대학교 교수 (2004~2009)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4	이동식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1981~1998) 현대자동차 팀장 차량기술사 자격 소지 (2002~2004) 전북대 기계공학 박사수료 (2015~2018) 전주비전대 겸임교수
5	김순진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1982~2020) 경상북도 서기관 퇴직 (2020~현재) 조이행정사무소 행정사

- 본 동의안은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비후보자 5명을 장성군 군민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

○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 3. 예정)에 따른 시범 지자체 선정과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지역 현안사업으로 행정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응 인력을 확보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 685명 → 715명 (증 30명)

-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단위 : 명)

구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행	685	345	17	106	43	174
개정	715	371	17	105	46	176
증감	+30	+26	-	△1	+3	+2

- 본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전담조직 신설 및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지역 현안사업으로 행정수요 지속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7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관광과)

O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 (현행)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개정)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어린이 · 시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9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감독 등(안 제10조 ~ 제12조)

- 본 전부개정안은「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 장성 군관리계획(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문화교육과)

O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서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관람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 사업추진 중인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황룡면 필암리 538-3번지 일원(6,342㎡)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해제) →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변경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서 주차장 조성 불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기 설정된 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필암서원 국가유산 지정구역과 중복된 구역(5,966㎡)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 명확화)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사업(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서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관람수용태세 개선 및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사항으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

O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 · (현행) 보험료 부과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
 - · (개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장성군 추모공원(공설납골당)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선호도 증가 추세에 따른 장례 문화에 적극 대응 및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 역량있는 민간 전문법인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운영 목적
 - · 장사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민간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장례 서비스 제공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5. 10. 1. ~ 2030. 9. 30.(5년)

· 위탁사업 : 추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대상 : 장성군 추모공원(삼계면 영장로 900)

- O 본 동의안은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선호도 증가 추세에 따른 장례 문화에 적극 대응 및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 역량있는 민간 전문법인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및 돌봄 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보호자 부재로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신규사업인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운영 목적
 - ·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인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5. 9. ~ 12.

· 사업대상 : 보호자 부재로 돌봄 필요 노인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외자 우선지원)

- · 사업내용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병원 이동 지원
 - · 자택부터 병원 출발 및 귀가(진료동행, 병원 접수 및 수납지원)
 - · 의사의 진료결과 및 약처방, 복용법 등 보호자 전달
- · 서비스 제공지역 : 장성군 관내
- · 이용시간: 1일 4시간(월~금, 09시~18시)
- · 이용금액 : 4.000원(수급자·차상위 무료)
- · 예약기간 : 이용일 7일 전
- · 소요예산 : 50,000천원(고향사랑기금)

- 본 동의안은「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돌봄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보호자 부재로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신규사업인 병원 동행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2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환경과)

○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사유 : 2025년도 운용계획 변경(복리증진사업 집행)

※ 월평5리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 기금운영 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수입 및 지출액		증감	
구 분	항 목	경정	기정	<u> </u>	
	계	1,988,422	1,988,422	-	
ᄉᅁ	이자수입(a)	52,871	52,871	-	
수 입	예치금회수(b)	1,805,551	1,805,551	-	
	전입금(c)	130,000	130,000	-	
	계	1,988,422	1,988,422	-	
지 출	일반보전금(d)	206,540	142,000	64,540	
	예치금(e)	1,781,882	1,846,422	△64,540	

- 본 변경안은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3/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1건(토지)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	재산가액 (천원)	비고
계	1개 사업		33,714.9	920,416	
토지	나노일반산업단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	남면 삼태리 879	33,714.9	920,416	

-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 분		필지수 / 동수	면적 (㎡)	재산가액 (천원)	비고
———— 계		1필지	33,714.9	920,416	
 취득	토지	1필지	33,714.9	920,416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4/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

O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시행 2025.3.21.)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목적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 지역보건법 시행령(2015.11.19. 제2조제5항 → 제3조제3항으로 변경)
- 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2조)
- ·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 수립·평가 등
- 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3조제2항, 4항)
 - · 위원장 군수→부군수,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당연직 3명→1명

-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5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

○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지정 방식 개선 및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
- 병원의 주요 운영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위원 회의 객관성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안 제5조제3항)
- 위원장·부위원장 지정 방식 및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5조제4항)
-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 정비(안 제5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지정방식 개선 및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

- O 병원의 주요 운영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위원 회의 객관성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O 현행 조례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 선정관련 재위탁의 경우 관련 조항이 미흡하여,
- 재위탁시 책임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의무조항 을 삽입・수정하자는 의견 제출.

6. 수정안의 요지

- 장성군 공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에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추가 변경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추가 신설하는 수정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수탁자 선정) ① (생 략)	제8조(수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신 설>	②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16/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철도,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위

O 제출일자 : 2025. 9. 1.

O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

○ 회부일자 : 2025.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9.(제3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사무공간 및 보건사업 공간 부족, 주차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위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10-3번지 일원(장성역 주변)

· 면적 : 11,422 ㎡

-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교통시설(철도) 철도1 변경 신설(A=606,065 m²→602,876 m²) 감)3,189 m²(0.5%)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공공청사 A 신설(A=11,422 m²)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사무공간 및 보건사업공간 부족, 주차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사항으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